



규정

동원학원발전위원회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A-A142
제정일자	2011. 09. 01.
개정일자	2023. 03. 29.
개정번호	1
페이지	1/4

목 차

부칙

작성부서	사무처	제정일자	2011. 09. 01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	승 인
직 책	담 당							총 장
서 명								
일 자								

	규정		문서번호	TWA-A142
			제정일자	2011. 09. 01.
	동원학원발전위원회 운영 규정		개정일자	2023. 03. 29.
			개정번호	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정관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동원학원발전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의 기능 및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설치) 위원회의 설치는 법인정관 제72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동원대학교 내에 사무소를 둔다.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 ② 위원회는 법인이사, 교직원,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로 구성한다.

제4조(위원회 회장 등) ① 위원회에는 회장과 부회장을 각각 1인을 둔다.
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임한다.
 ③ 회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 ④ 간사1인을 대학의 일반직6급 이상의 직원으로 겸보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 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제안 또는 자문할 수 있다.

<개정 2023.03.29.>

1. 동원대학교의 중·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수익용기본재산 증대 방안에 관한 사항
3. 대학발전 기금 유치에 관한 사항
4. 법인정관 제32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대학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이사장 또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.
 ② 위원회의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회의록) 회의록에는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
	규정		문서번호	TWA-A142
			제정일자	2011. 09. 01.
	동원학원발전위원회 운영 규정		개정일자	2023. 03. 29.
			개정번호	1

제9조(비밀유지) 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0조(담당직원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직원 1인을 둘 수 있다.

② 담당직원은 동원대학교 소속으로 한다.

③ 담당직원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수집, 검토, 활용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작성된 문서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.

제11조(회의비 지출 등)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비는 동원대학교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회계 책임은 총장의 지휘에 의하되, 실무책임은 사무처장이 한다.

제12조(보칙)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